

瑞山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2000. 6. 29

産業建設委員會

##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0. 6. 21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0. 6. 22
- 라. 上程日字 : 2000. 6. 29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建設課長 金亨來)

### 가. 提案理由

-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의 개정  
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을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함으로써,  
점용료의 산정을 있어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4항).
- 주택 출입목적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던 것을 도로법 점용료  
개정에 따라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5조3항 신설).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전용면적의 길이, 표시면적등의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점용료 부과에 불합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을 면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였음.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민경제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 본안은 시민에게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으며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60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재 회)

##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6 . 1 .

#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0 호
----------	---------

제출년월일 : 2000. 6. 31.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정이유

-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을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함으로서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 종전에는 주택출입 목적일 경우에도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던 것을 도로법에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5조제3항).
- 도로법의 점용료산정기준표 개정에 따라 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 3. 참고 관련자료

- 관련법령
  - 도로법 제43조.
  - 도로법 제44조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 도조례
- 입법예고 : 2000. 5. 1 ~ 5. 20 (특기할 사항없음)

##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중 “표시부분의 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점용물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어스양카, 암거, 이와 유사한 것

별표 1의 현수막의 점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
100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p> <p>① ~ ③ 생략</p> <p>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 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의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 면적은 <u>표시부분의 면적으로</u> 한다.</p> <p>⑤ ~ ⑨ (생략)</p> <p>제5조(점용료의 감면)</p> <p>① ~ 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u> <u>의 면적</u> -----</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의 감면)</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1항관련)	기준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료
				(금액의 단위 : 원)					(금액의 단위 : 원)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1항관련)	1.전주, 공중전화, 송진탑, 기타의와 유사한 것	1개	600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전주			60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전주와 유사한 것	1개	1년	900	변압탑, 무선전화기, 중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 교통신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 중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 교통신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공중전화			24,100					---
	송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송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현		행		개 정 안									
2.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직경0.1미터이하 직경0.1미터초과0.2미터이하 직경0.2미터초과0.4미터이하 직경0.4미터초과0.6미터이하 직경0.6미터초과0.8미터이하 직경0.8미터초과1.0미터이하 직경1.0미터초과2.0미터이하 직경2.0미터초과3.0미터이하 직경3.0미터 초과	길이 1미터	1년	2.수도관 전기구 등 지하배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 (배설),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50	---						
						300	---						
						600	---						
						900	---						
						1,200	---						
						1,500	---						
						2,250	---						
						3,750	---						
						5,250	---						
						기타의관	어스앵카, 암거, 이와 유사 한 것	직경0.1미터이하 직경0.1미터초과0.2미터이하 직경0.2미터초과0.4미터이하 직경0.4미터초과0.6미터이하 직경0.6미터초과0.8미터이하 직경0.8미터초과1.0미터이하 직경1.0미터초과2.0미터이하 직경2.0미터초과3.0미터이하 직경3.0미터 초과	길이 1미터	1년	어스앵카, 암거, 이와 유사 한 것	---	
												200	---
												450	---
												900	---
1,350	---												
1,800	---												
2,250	---												
3,350	---												
5,600	---												
7,850	---												

현				행				개				정				안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을 포함한다)	일시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포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00	-----	-----	-----	-----	-----	-----	-----	-----	-----	-----	-----	-----		
		기 타	포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5,000	-----	-----	-----	-----	-----	-----	-----	-----	-----	-----	-----	-----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	-----	-----	-----	-----	-----	-----	-----	-----	-----	-----	-----		
		제사나 종교행 사의 용도로 일 시 설치한 것	포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	-----	-----	-----	-----	-----	-----	-----	-----	-----	-----	-----	-----	
아 취	도로횡단 기타	기타의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정 개 행

현행과 같음

현		행	
4.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1년			
점용면적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5.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년	
점용면적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 타			
1년			
점용면적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년	
점용면적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현		행			개	정	안
7.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포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현행과 같음.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00			
	기 타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농업,주택 및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식물재배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기 타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